

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	2000. 12. 29	조례 제 308호	
개정	2001. 3. 16	조례 제 323호	
	2003. 3. 21	조례 제 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	
	2004. 1. 15	조례 제 499호	
	2005. 7. 29	조례 제 601호(지방공무원 정원 조례)	
	2005. 10. 5	조례 제 682호	
	2005. 10. 27	조례 제 778호(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	
	2007. 7. 1	조례 제 88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	
	2010. 12. 17	조례 제111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	일부개정	2013. 3. 6	조례 제12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	일부개정	2013. 11. 1	조례 제132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10. 6	조례 제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5. 2. 27	조례 제1431호	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8. 5. 14	조례 제1804호	
일부개정	2019. 8. 7	조례 제1948호	
일부개정	2020. 11. 9	조례 제2079호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	
일부개정	2024. 10. 30	조례 제2561호	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2조 삭제 <2018. 5. 14>

제3조(기금의 설치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훈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>

제4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1. 시의 출연금
 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- ② 기금은 총 5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.
-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15. 2. 27, 개정 2018. 5. 14, 2019. 8. 7, 2024. 10. 30>

[제목개정 2015. 2. 27]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>

1.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
2.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행사 지원
3.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
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2. 27, 2018. 5. 14>

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27, 2015. 2. 27, 2018. 5. 14, 2020. 11. 9>

③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년도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,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>

④ 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 <신설 2018. 5. 14>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본조신설 2019. 8. 7]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>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의2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, 2019. 8. 7, 2024. 10. 30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훈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10. 5, 2015. 2. 27, 2017. 10. 2, 2018. 5. 14, 2019. 8. 7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10. 5, 2007. 7. 1, 2010. 12. 17, 2013. 3. 6, 2013. 11. 1, 2014. 10. 6, 2015. 2. 27, 2018. 5. 14, 2019. 8. 7, 2024. 10. 30>

1. 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
2. 용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(2명)
3. 기금운용 및 보훈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

④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. <개정 2019. 8. 7>

[제목개정 2019. 8. 7]

[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8. 7]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0. 30>

② 삭제 <2018. 5. 14>

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2. 27]

제10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9. 8. 7]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5. 14>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의2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8. 7]

제12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8. 5. 14>

1. 연도별 기금구성 및 집행현황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3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제14조 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7. 29, 2005. 10. 5, 2015. 2. 27, 2018. 5. 14>

1. 기금운용관: 보훈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삭제 <2018. 5. 14>
3. 기금출납원: 보훈업무 담당 팀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제15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6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7조 삭제 <2024. 10. 30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3. 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3. 2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7. 2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⑤ 생략

⑥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⑦ 내지 ⑪ 생략

부칙 <2010. 12.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산업정책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3. 6 조례 제127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⑦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1. 1 조례 제132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0. 6 조례 제13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 재정경제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, 행정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2. 27 조례 제14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㉞ 까지 생략

㉟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㊱ 부터 ㊳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8. 7 조례 제194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1. 9 조례 제2079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제1항”을 “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통합기금”을 “통합계정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24. 10. 30 조례 제256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